

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
상법 제354조, 당사 정관 제13조 및 제4조에 의거하여 2018년 1월 13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로 확정하고, 이를 위해 2018년 1월 14일부터 2018년 1월 17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, 신탁재산의 표기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
2017년 12월 29일
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102

도레이케미칼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
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

이 영 관

이쥬인 히데키

임 희 석

이 병 래